

## 천주교회에서는 조상 제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는 조상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불호 집단이어서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지금은 조상 제사를 허락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나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첫 순교자들인 윤지충과 권상연은 조상 제사 문제가 직접 발단이 돼 순교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조상 제사를 조상에게 효성을 표하는 미풍양속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조상 제사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16세기 말 중국에서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여러 수도회들이 선교하고 있었는데 대표적 수도회로 예수회와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천주실의』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마테오 리치로 대표되는 예수회 회원들은 중국의 유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천주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원들은 조상 제사를 조상에게 효성을 바치는 미풍양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선교사들은 조상 제사를 미신 행위로 보았습니다.

선교사들 간의 이런 견해 차이로 이른바 ‘제사 논쟁’이 시작됩니다. 약 100년 동안 계속되던 제사 논쟁은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칙서와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의 칙서로 일단락됩니다. 이 두 교황의 칙서들은 조상 제사를 미신 행위로 보고 엄하게 금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제례에 참여하거나 ‘신주(神主) 또는 ‘신위(神位)라는 글을 써 붙인 위패를 집안에 두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 절하는 것 역시 금지됐습니다.

교황청의 이런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1790년 북경을 통해서였습니다. 유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제사를 엄격히 금한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이제 갓 천주교에 귀의한 신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천주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전라도 진산(현재 충남 금산군)에 사는 윤지충(바오로, 1759~1791)이라는 열심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제사를 금하는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여 집에 모시고 있던 신주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1791년 5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외사촌 형 권상연(야고보, 1751(?)~1791)과 상의해 전통 제례 대신에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화근이 돼 이 두 사람은 전주 풍남문 밖(현재 전주 전통 성당 자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들이 한국 천주교회 첫 순교자들입니다.

조상 제사 금지에 관한 교황청 가르침이 바뀐 것은 20세기에 와서였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가 1939년 「중국 의식(儀式)에 관한 훈령」을 통해 조상 제사에 대해 관용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0년 전과 달리 조상 제사가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풍속이라고 전향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윤지충 바오로가 모친상을 유교식 제사가 아닌 천주교 예절로 치른 것을 안 종친들은 크게 노여워했다.



▲예수회 회원들은 중국의 유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천주교를 전했다.(왼쪽 마테오 리치)

이에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는 시신이나 무덤, 죽은 이의 사진(영정)이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서는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는 행위 등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축문을 읽거나 합문(闈門: 조상의 혼령이 음식을 드는 동안 병풍으로 가리거나 문을 닫는 행위)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또 위패에 ‘신위’ 또는 ‘신주’라는 글씨를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참된 신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 발효된 한국 천주교회의 지역 교회법인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제례와 관련해 이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근본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제 134조 1항).

「사목지침서」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조상에게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제135조 2항).

최근 들어 추석이나 설 명절에 합동 위령 미사를 거행할 때 신자들이 모두 나와서 분향을 하도록 하는 본당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교회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를 드리더라도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위령 기도를 바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전통이어서 교회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 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승인한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평화신문 2007년 9월 23일자 <교회 상식 교리 상식>)